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02
----------	------

발의연월일 : 2016. 12. 26.

발 의 자 : 강길부 · 박명재 · 안상수  
정용기 · 곽대훈 · 신상진  
나경원 · 이군현 · 김세연  
원유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신산업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비식별화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식별화’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비식별화를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으로부터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식별화된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8조의5 신설).
- 마.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을 “결합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알아볼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6으로 하고,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걱정성 평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걱정성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단으로부터 비식별화 걱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생성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및 추가적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비식별화된 정보의 이용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5(재식별 방지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식별화된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8조의2제1항”을 “제28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8조의2제2항을”을 “제28조의6제2항을”로 한다.

4의2. 제28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  
화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8조의2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3의3. 제28조의5(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적정성 평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단으로부터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생성된 개인정보의 파

기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신 설>

<신 설>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생 략)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 ① (생 략)
-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  
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

과기 및 추가적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비식별화된 정보의 이  
용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  
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5(재식별 방지 조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식  
별화된 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개인정보의 누설금지)  
(현행 제28조의2와 같음)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

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 설>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

-----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  
-----.

제71조(벌칙)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8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6제1항-----  
-----  
-----

6. 제28조의6제2항-----  
-----  
-----

은 자

7. ~ 11. (생 략)

②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12. (생 략)

② ~ ⑦ (생 략)

----

7.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8조의2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3의3. 제28조의5(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

4.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